

수입 유기농 식품 관련 Q & A

2010. 12



수입 식품 과

목 차

Q1. 유기가공식품과 유기농산물의 차이점은?	3
Q2. 유기농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	3
Q3.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?	3
Q4.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	4
Q5. 외국에서 유기농 인증받은 제품은 그대로 "유기농(organic)" 표시할 수 있는지?	4
Q6. 식약청이 인정하는 외국의 유기농 인증기관은?	4
Q7. 유기농 인증서 이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는데,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	5
Q8. 제가 제출한 유기농 인증서가 인정되지 않다고 하는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	5
Q9. 유기농 인증서에 기재된 정보가 식약청 홈페이지와 다른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	6
Q10. 2012년 말에 외국에서 유기농 인증받은 식품을 수입하였는데, 2013.1.1일부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인지?	6

[Q1] 유기가공식품과 유기농산물의 차이점은?

- 유기농산물은 전환기간(다년생작물은 3년, 그 외 작물은 2년)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입니다.
-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 원료(농산물 등)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으로서,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비(非)유기식품 또는 오염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·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.

[Q2] 유기농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
- 식품(농산물 포함)에 “유기농(Organic)” 표시하려면 국내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사전에 유기농 인증을 받거나, 외국에서 유기농 인증 받은 서류를 매수입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2013.1.1일부터는 수입하는 식품에 "유기농(Organic)" 표시하려면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사전에 유기농으로 인증받아야 합니다.

[Q3]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?

-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2008.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다만, 새로운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전 수입자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2012.12.31일까지는 기존에 외국에서 유기농 인증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유기농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013.1.1일부터는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사전에 인증받은 식품만 유기농 표시할 수 있습니다.

[Q4]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수출국의 유기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국내외 유기농 인증기관(농림수산식품부가 인정한 기관에 한함)에 유기농 인증 신청하면, 서류 심사 후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하게 됩니다.
- 유기 가공식품 인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 안전정보 서비스(www.foodsafety.go.kr)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[Q5] 외국에서 유기농 인증받은 제품은 그대로 “유기농(organic)” 표시할 수 있는지?

- 식약청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(IFOAM)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식품만 인정하고 있습니다. 수입할 때마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(IFOAM)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유기농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외국에서 유기농 인증받았더라도 식약청이 인정하고 있는 인증기관이 아니거나, 인증내용과 수입한 제품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유기농(organic) 표시를 삭제하여야 합니다.

[Q6] 식약청이 인정하는 외국의 유기농 인증기관은?

- 식약청은 ‘10. 12월 기준 30개국의 345개 유기농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식약청이 인정하는 유기농 인증기관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 → KFDA 분야별 정보 → 유기농 인증기관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[Q7] 유기농 인증서 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는데,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-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유기농 인증서는, 기관에 따라 서식이 달라 제품 정보를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
- 유기농 인증서만으로 수입한 물품이 유기농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, transaction certificate 또는 제조회사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**transaction certificate** : 유기농 인증된 식품의 수출시 유기농 인증기관이 화물별로 발행하는 서류로서, 수출·입 업체명, 제품명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[Q8] 제가 제출한 유기농 인증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제출하신 유기농 인증서가 식약청이 인정하고 있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거나, 인증서 기재 내용과 수입한 제품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유기농 표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.
- 제출하신 인증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"유기농(organic)" 표시를 삭제하여야 합니다.
- 인증서 기재 내용이 수입한 제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제품에 표시된 "유기농(organic)" 표시를 삭제하여야 합니다.

[Q₉] 식약청이 인정한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. 인증서에 기재된 정보가 식약청 홈페이지와 다른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식약청은 수출국 정부로부터 유기농 인증기관명, 주소(소재지), 전화번호, 인증범위 등을 통보받아 인정하고 있습니다. 인증기관명 또는 주소(소재지)가 변경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Q₁₀] 2012년 말에 외국에서 유기농 인증받은 식품을 수입하였는데, 2013. 1. 1일부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인지?

-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유기농식품 인증제는 수입 뿐 아니라 유통 중인 식품에도 적용됩니다. 2013. 1. 1일부터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사전에 인증받은 식품만 유기농 표시 및 유통·판매가 가능합니다.
- 따라서 외국에서 유기농 인증받은 제품을 2012년까지 수입하였더라도 2013. 1. 1부터는 유통·판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(02-500-2099)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